

단체의 선거운동 안내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각종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2016. 4. 13.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방법을 안내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중 단체와 관련된 규정들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이 자료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할 수 있는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안내자료에 의하여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의도선거지원단(02-780-2684)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www.nec.go.kr)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용어의 표기
 -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자, ‘입후보예정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 ⇒ ‘선거법’ 또는 ‘법’으로 표기
 - ‘제58조’ ⇒ ‘§58’로 표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로 표기
 - ‘국회의원선거’ ⇒ ‘국선’으로 표기

Contents

제1장 선거운동 일반 7

- 1. 의 의 8
- 2. 선거운동의 개념 9
- 3. 선거운동기간 11
-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할 수 없는 단체 13
- 5.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20

제2장 단체가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 23

- 1. 공명선거추진활동 24
- 2. 투표참여 권유활동 26
- 3. 정책 · 공약의 비교 평가 31
- 4.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 선언 · 공표 33
- 5. 후보자 등 초청 대담 · 토론회 개최 35

제3장 단체가 선거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행위 41

- 1.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금지 42
- 2. 사조직 · 유사기관의 설립 · 설치 금지 44
- 3. 기부행위의 제한 · 금지 48
- 4. 집회 · 모임 등 개최 제한 53
- 5. 선전물(시설물 · 인쇄물) 설치 · 배부 금지 55
- 6. 서명 · 날인운동 금지 57
- 7.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 금지 58

Contents

제4장 단체 회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63

1. 인터넷 홈페이지 ·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64
2. 전 화 71
3.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 73
4. 선거운동용 홍보물에 지지 · 추천사 게재 76
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에 참여 77
6. 거리에서의 행진 · 인사 · 연호 78
7. 공개장소에서의 지지 · 호소 80

제5장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의 한계 83

부 록

1. 정치인 팬클럽 조직 · 활동 관련 사례예시 94
2. 시민 · 사회단체의 선거참여활동 관련 판례 101
3. 단체활동 관련 법조문 107
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선거사무 일정표 118







제1장 선거운동 일반

1. 의 의

2. 선거운동의 개념

3. 선거운동기간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할 수 없는 단체

5.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1. 의 의

-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 등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한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다만,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재외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모든 단체가 선거운동 불가 (법 §218조의14)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회원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문자메시지¹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²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 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 설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표지판·어깨띠 등 휴대·착용, 인쇄물 배부,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 개최, 거리행진·연호, 서명운동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1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5회 이내).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후보자가 예비후보자와 아닌 개인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제4장 1.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참조)

2 전자우편이란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함. 또한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2. 선거운동의 개념 (법 §58)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교탄신일 등(이하 ‘명절 등’이라 함)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는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판례

● ‘선거운동’의 의미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체·시기·내용·장소·방법·대상·범위·태양·행위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10451 판결).

● 선거운동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

일반적으로 선거운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선거가 특정되어야 하고, 둘째,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이 특정되어야 하며, 셋째,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넷째,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필요하고 유리한 행위가 있어야 함.

●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선거법 제58조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다분히 포괄적이고 불특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개의 다양한 행위나 활동 중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의 유형을 체계화하여 법으로 망라하는 데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은 그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법에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의 기준 내지는 원칙만을 정한데 따른 것임.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행위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 내지 원칙에 따라 개별적·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

● 낙선 목적의 낙선운동이 선거운동인지 여부 ⇒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임

제3자가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 목적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음(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의 의미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란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기 위한 교섭행위 및 선거사무소·연설향소 등 물색행위, 선거운동용 자동차·확성장치 등 임차행위,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선전물 사전 제작행위, 연설문 작성행위, 예비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선거법 해설강좌 실시행위 등을 말함(헌법재판소 2005.10.27. 2004헌바41 결정).

3. 선거운동기간 (법 §59)

●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2016. 3. 31)부터 선거일 전일(4. 12)까지를 말함. (13일간)

● 예 외

- 예비후보자 등이 법 제6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가능

※ 예비후보자 등록은 제20대 국선은 선거일전 120일(2015. 12. 15.)부터임.

-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포함)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언제든지 가능

선거법 위반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선거구민인 이장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여 식사와 음주를 함께 하면서 각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언급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국선 입후보예정자가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인사를 하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그 옆에서 함께 인사를 한 경우, 그들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 관공서 등 사무실을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등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농업을 아는 사람이 앞으로 큰일을 해야 지역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전 ○○○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위반됨.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0. 10. 28. 선고 2010고합196 판결)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할 수 없는 단체 (법 §87)

1 법규요약

Yes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 원칙적으로, 기관·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회원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 게시 또는 문자(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No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단체의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 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³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⁴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연연초생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노동조합이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에서 지지할 정당을 결정하고 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행위
- 시민단체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를 낙선 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 ➡ 다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임.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하여 줄 것을 해당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건의·요구하는 행위
 - ➡ 다만,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그 선거공약을 반대하거나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법 제107조 또는 제254조에, 그리고 집회가 선거기간중에도 계속될 경우 법 제103조에도 위반되며, 그 단체가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결성된 경우 법 제87조에 의하여 설립·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됨.
- 노동조합이 지지 후보자 파약을 위해 산하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 제108조나 제254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ARS를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공직선거 정책연대 대상 후보자 결정을 위하여 전 조합원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행위

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정치인팬클럽도 개인간의 사적모임에 해당됨.

- 정책연대 후보자 결정 및 동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주관 전국노동자대회에 입후보예정자를 단순한 내빈으로 초청하는 행위
 - ➔ 다만, 참석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축사·격려사 또는 연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법 제254조에 위반
-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지지후보자의 이름과 지역구 등을 표시하여 POP-UP으로 게시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지지후보의 이름과 지역구를 표시하여 이름을 클릭하면 지지후보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행위
- A당과 B당이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단일화를 합의한 가운데 지역노동조합이 후보단일화 공동기구 등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A당 후보와 B당 후보 중 지지할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를 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사실이나 그 후보자를 위하여 할 자원봉사 활동 등을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행위
 - ➔ 이 경우 별도의 인쇄물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때에는 선거법 제93조에 위반
- 선거기간 전에 회원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지지대상자를 결정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표지판·어깨띠 등 휴대·착용, 인쇄물 배부, 확장장치 및 자동차를 이용한 연설,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개최, 거리행진·연호, 서명운동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노동조합이 대담·토론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와 무관한 내용으로 입후보예정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는 행위

-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 다만,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또는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산악회의 회원이 순수히 등산목적의 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행위
 - ➡ 다만,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거나 설립하게 하는 경우 입후보예정자의 산악회장 취임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제87조제2항에 위반됨.
-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체의 명의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것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은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치자금법」상 후원회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원회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후원회의 모집금품을 자신들의 선거운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하거나, 금품모집의 기회를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합동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한다는 의견을 공표하거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을 그 기관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행위
 - ➡ 다만, 지지·반대 의견을 게재한 신문광고·현수막의 거리게시 또는 별도의 인쇄물·

시설물을 통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법 제90조·제93조·제95조에 위반됨.

- 동창회 내부에서 단순히 후보단일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정책연대 후보자를 결정한 후에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으로 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 ➔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는 자동동보통신⁵에 의한 문자 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전자우편 발송이 불가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지단체로 등록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연합하여 교육감 후보자를 추대하기 위한 추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 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추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No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 변경·별도 설치 제외)을 이용하여 20인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 및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는 자동동보통신이 아님.

-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포럼을 설립하는 행위
 - ▶ 다만, 설립이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그 포럼의 대표가 되거나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선거와 무관한 내용으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단순히 강연을 듣는 것은 무방함.
-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소속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
- 지지후보 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시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복수 혹은 단수의 후보자를 알리기 위하여 조합선관위가 발행하는 포스터, 신문, 대자보에 각 후보자의 이력과 정책공약 등이 담긴 선전물을 조합원에게 배포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옥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초청하여 공약 등이 포함된 강연을 듣는 행위
- 단체가 선거기간중에 후보자의 공약평가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정책연대 후보자 결정을 위한 ARS 투표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하기 위한 라디오 광고를 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정책연대 후보자를 결정한 후에 총회 등 여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지지를 결의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정책연대를 결정한 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 등을 노동조합 건물의 외벽에 걸거나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 단체가 낙천·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 등을 제작하여 거리집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서명운동을

하며, 낙천·낙선운동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부착하는 행위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 단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단체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경우 및 지지후보 결정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소속구성원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행위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511 판결)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을 사업장내 또는 외벽에 게시한 행위 (부산고등법원 2004. 11. 17. 선고 2004노787 판결)
- 노동조합이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행위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 227 판결)

5.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법 §60)

1 법규요약

Yes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No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음.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 ③ 선거권이 없는 자
 -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⑤ 각급 선관위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⑥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⑦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⑧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⑨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 다만, 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위 ④내지 ⑧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주요 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에 내빈으로 초청되어 단순히 참관하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 등의 소개에 응하는 행위
 - ➡ 다만, 단순한 참관 또는 소개에 응하는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법 제60조에 위반됨.
-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당법」 제22조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아닌 경우 정당가입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자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9세 미만의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위법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정당의 내부적인 선거사무에 자원봉사활동(대외적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대책기구 회의에 참석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행위 등)을 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미성년자인 자신의 아들(10세)로 하여금 “우리 아빠는 컴퓨터도 잘하며, 동생과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우리 아빠를 도와주세요”라는 연설을 하게 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1996. 5. 9. 선고 95고합415 판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라고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서울고등법원 2004. 10. 19. 선고 2004노1844 판결)





제2장 단체가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

1. 공명선거추진활동
2. 투표참여 권유활동
3. 정책·공약의 비교 평가
4.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선언·공표
5.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1. 공명선거추진활동 (법 §10)

1 법규요약

● 주 체 : 사회단체 등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음.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가족(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 활동내용 :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

● 의 무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함.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정당·후보자에게 ‘매니페스토’ 운동의 소개와 공약의 개발방법·평가방법 등을 담은 실천가이드북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토론회·서명운동·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행위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역별 ‘매니페스토’ 운동 추진기구를 구성·운영하는 행위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공약공모전·공약은행운영·주민제안운동 등을 통해 공약을 공모하고 공모된 결과를 선거구민에게 단순하게 알리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와 무관하게 순수한 영업 활동과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투표를 한 사람에게 상품할인 등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정당·후보자와 ‘매니페스토’ 협약을 맺고 협약결과를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통하여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행위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매니페스토’의 소개와 개발방법 등을 담은 실천가이드북 등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만 제공·활용토록 하는 행위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상징하는 배지를 착용하고 다니는 행위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매니페스토’ 운동과 관련된 토론회·서명운동·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2. 투표참여 권유활동 (법 §58조의2)

1 법규요약

- 주 체 : 누구든지
- 허용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금지행위
 -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장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주요선례

1.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Yes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 ※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 게시·배부 및 호별방문은 금지
-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법 제67조)에 투표참여 권유내용을 포함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 선거일에 새로 게시하거나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등에 게시 금지

- 예비후보자·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연락소)의 외벽에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중앙당 및 시·도당 당사의 외벽에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에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운동용 명함에 투표참여 권유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지하철역이나 거리 등에서 배부하는 행위

2. 확장장치·녹음기·녹화기

Yes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장장치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행위는 금지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확장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연설 등을 하거나 연설·대담 차량에 설치된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방영하는 행위
 -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행위는 금지

No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확장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연설 등을 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방영하는 행위

3. 어깨띠, 표찰 등 그 밖의 표시물

Yes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없는 내용의 어깨띠, 표찰 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행위는 금지
-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윗옷, 어깨띠, 표찰, 소품 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 윗옷, 어깨띠 등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게재할 수 있음.
 -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행위는 금지

No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윗옷,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가 착용하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

4.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SNS 포함)

Yes 할 수 있는 사례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으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으로 전송하는 행위
 - ※ 위의 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⁶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함.

No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단체활동 관련 법조문 참조(p108~109)

5. 전 화

Yes 할 수 있는 사례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후보자 포함)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3. 정책 · 공약의 비교 평가 (법 §108의2)

1 법규요약

- 주 체 : 법 제82조의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는 정당 ·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2. 법 §53(공무원 등의 입후보)①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 단체⁷
 3.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운영 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 단체
 7.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 · 단체
- 정당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이하 이 항목에서 '후보자등'이라 함]의 정책 ·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 다만, 이 경우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 운영하거나 후보자등 별로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 서열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 · 운영, 평가지표 · 기준 · 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 ·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공표하여야 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함.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①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공약의 장단점을 서술의 방법 등으로 나타내고, 유권자가 이를 토대로 스스로의 평가를 거쳐 그 우열을 판단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행위
-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결과를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으로 소속직원에게 알리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발송,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 등 선거법에서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안내하는 행위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공약 평가방법·평가지표를 담은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의 공약에 명시적으로 순위나 등급을 부여하는 행위
- 후보자의 공약평가의 결과에 명시적으로 순위나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공약간 우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공약평가결과를 정당·후보자별 점수화 또는 순위부여의 형식 등으로 공표하는 행위
- 공약평가자료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행위

4.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 선언 · 공표

Yes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기관지 · 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 · 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 · 보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 · 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를 정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위반
-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자회견 ·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지지하는 후보자를 공표하는 행위
 - ➔ 공무원 등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법 제9조 선거중립의무 위반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홈페이지에 그 지지자 명단을 게시하는 행위
- 평소 특정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상호간에 지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권유하거나 결의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대기구를 새로이 구성하는 행위
- 후보자 선출을 비롯한 각종 선거업무를 조율하기 위해 정당과 시민단체가 공동기구를 구성하는 행위
 - ▶ 정당간 공동기구 구성은 무방함.
- 시민단체가 구성원이 아닌 다수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는 행위
- 시민단체가 다수의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의 정견 등을 소개·홍보하는 행위
- 특정인을 특정 선거의 후보자로 추대하기 위하여 “○○후보 추대위원회” 등을 설립·설치하거나 그 구성원을 모집하는 행위
-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
- 사전에 일반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개최사실과 장소를 고지하고 그 장소에 연단·확성기를 설치·사용하는 행위

5. 후보자 등 초청 대담 · 토론회 개최 (법 §81)

1 법규요약

● 개최주체 : 단체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는 대담 · 토론회⁸를 개최할 수 없음.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 · 수산업협동조합법 · 산림조합법 ·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새마을운동협의회 ·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그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그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 ·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 개최할 수 있는 기간 : 선거운동기간중

● 초청대상 : 후보자(비례대표국선에서는 그 추천정당이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함) 1인 또는 수인

● 개최신고

-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 · 시 · 군선관위에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 · 토론회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 서면신고

8 대담이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토론회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회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 · 답변하는 것을 말함.

-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개최하지 아니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의 후보자 등을 먼저 초청하여 대담·토론을 실시한 다음에 나머지 후보자 등을 초청하거나 1회에 1인 또는 2인 이상 후보자씩 순번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계획을 맨 먼저 개최할 대담·토론회 개최 신고시에 함께 제출함.

● 장소표지 : 개최장소에 2매이내의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

● 유의사항

-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 등(비례대표국선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에게 미리 통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옥내에서 개최하되, 그 개최장소는 공개되어야 함.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기타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음.

- 대담·토론회를 진행할 때에는 질문과 답변의 횟수와 시간은 참석한 모든 후보자 등에게 공정하여야 함

- 사회자는 참석한 후보자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타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나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를 하여야 함.

-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나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 대담·토론회 개최비용은 주최하는 단체가 부담해야 함.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정당이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후보자 참여 토론회를 개최한 다음 그를 기초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자를 단일화하는 행위 (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상 지지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천명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법 제82조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국선 선거일전 60일(2016. 2. 13.)부터 선거운동기간개시일전일(2016. 3. 30.)까지 예비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예비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법 제82조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언론기관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법 제82조에 의한 방식으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방영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중계방송하게 하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에 종사하는 자에게 보도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행위
- 대학교 학생회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도 선거기간 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공무원노동조합이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한국자유총연맹이 발행하는 '자유공론'이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보자 등 초청·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영상을 대담·토론회시 상영하는 행위
- 대담·토론회 장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인쇄물 기타 선전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 초청·대담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제3장 단체가 선거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행위

1.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금지
2. 사조직 · 유사기관의 설립 · 설치 금지
3. 기부행위의 제한 · 금지
4. 집회 · 모임 등 개최 제한
5. 선전물(시설물 · 인쇄물) 설치 · 배부 금지
6. 서명 · 날인운동 금지
7.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 금지

1.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금지

1 법규요약

1)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법 §85㉓)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 교육적·종교적·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계열화나 하도급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단체 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법 §86㉑)

- 금지주체
 - 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의 상근 임·직원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금지행위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종교집회에서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의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
 - ➔ 다만, 단순히 동정의 소개를 넘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3항에 위반됨.

No 할 수 없는 사례

- 출판사를 경영하는 후보자가 출판사 직원들을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
- △△자동차 협력업체인 □□□□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채용, 노무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식당에서 △△자동차에 파견 중이던 위 □□□□ 소속 ○○○을 비

못한 23명을 격려한다는 이유로 모이게 하여, 위 조원들에게 “내가 광주 ○구 선거구에서 내년 광주광역시의원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 여러분들 중 ○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구에 살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구 쪽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1인당 5장씩 ◇◇당 입당원서를 받아주면 입당원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당비를 내지 않도록 하겠으니 도와 달라” 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계속하여 위 회사 ◇◇ 등 28명을 같은 이유로 모이게 하여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2. 사조직 · 유사기관의 설립 · 설치 금지

1 법규요약

1) 사조직의 설립 · 설치 금지 (법 §87②)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 동우회 · 향우회 · 산악회 ·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2) 유사기관의 설립 · 설치 및 이용금지 (법 §89①)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 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외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 후원회 · 연구소 ·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3)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 금지 (법 §89②)

- 금지주체 :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행위
 -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그 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이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 ※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가능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와 관련 없는 순수한 목적의 연구소 등 개설 행위
 - ➡ 연구소 등이라 하더라도 직업상의 사무소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은 설치할 수 없음.
-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를 위한 사무실 개설 행위
 -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설치하는 외에는 선거준비를 위한 사무소에 후보자 명의를 표시한 간판 등은 설치할 수 없음.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내부적 선거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유사기관에 해당함.
- 각종 단체 등이 선거와 관련 없이 당초의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당초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이라 하더라도 각종 선전물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선전하거나 기타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그 단체의 사무실을 단순히 그 구성원의 연락장소로 이용하거나 당해 단체의 회원이 사무소에 기 설치되어 있던 전화·컴퓨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단체의 사무소에 별도의 선거운동기구를 두는 등 선거사무소화하거나 기 설치된 전화·컴퓨터 외에 추가로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음.

No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조직의 목적이나 활동범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많은 선거구민을 구성원으로 확보하여 조직화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을 결성하는 행위

➡ '○○당을 사랑하는 모임' 이 정당 정치의 혁신을 위하여 당원들의 모임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그 모임의 실질적인 목적이나 활동이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면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설립·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함.

● 일반 선거권자인 택시기사, 보험설계사, 이·미용사 등 직능단체 회원들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직화하는 행위

● 동창회, 향우회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러한 단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 등을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변질시키거나 그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 개인이나 단체의 회원 등이 자택 등에 전화나 컴퓨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의 집에 전화기, 팩스, 컴퓨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선전 등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약속·권유하기 위하여 위촉장·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
- 연구소 등의 개설을 알리면서 후보(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직명 또는 성명을 게재한 선전물 등을 선거구내에 첩부·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행위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3220 판결)
- 후보자의 동생이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서신을 작성하고 사무실을 찾아 온 동창생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주지방법원 1998. 10. 14. 선고 98고합127 판결)
- 동창회 사무실 내부에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동창들이 모여 선거운동 대책을 논의하는 행위 (대법원 1995. 5. 25. 선고 99도675 판결)

3. 기부행위의 제한 · 금지

1 법규요약

1) 기부행위의 정의 (법 §112)

-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⁹나 기관 · 단체 ·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¹⁰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 기부행위 제한 기간 : 언제든지

2)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 (법 §113, §114, §115)

- 국회의원 · 지방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 언제든지 기부행위(주례행위 포함) 금지
-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 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 · 단체 또는 그 임 · 직원 :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 금지
- 제3자 :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금지

3)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법 §116)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 선거권 유무, 개인 · 법인 · 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함.
- 금지행위 : 기부행위 금지대상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금지대상자에게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

9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

2 주요선례



판단기준

-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 불균형으로 그 일부에 관하여는 무상인 경우라야 기부행위가 되고, 채무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를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나 유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됨.
- 기부행위의 대상은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다대할 필요는 없으며, 행위자가 기부한 물품을 돌려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교부한 것만으로도 기부행위가 됨.
- 통상적인 음식물의 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 다과류는 3천원 이하, 음료는 1천원 이하로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념품 또는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함.
- 기부행위 상대방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받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으로 볼 수 없음.
 -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

르는 자도 포함되고,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그 참여자 전원이 선거구민일 필요는 없음.

- 10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해당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 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함.

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임.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35 판결)

- 기부행위는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금품 또는 이익 등의 사실상의 출연자에 한정되지 않음.
- 피고인이 기부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의 부지와 유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499 판결)
-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비록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함으로써 후보자의 기부행위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달한다고 할 것임.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47 판결)

Yes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 등이 각종 사고·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 포함)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내의 내빈 등에게 회사 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유공자를 표창하거나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주는 행위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주는 행위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불가
-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불가
 -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에서는 상장을 수여할 수 없음.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주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 표시는 불가

※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병자하여 일반선거구민, 일반당원 등에게 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불가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택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 제외)을 회사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안의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에 대비하여 상당한 득표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직능단체 임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향수를 선물한 행위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653 판결)
- 농협조합장인 후보자가 농협에 노인대학을 개설하고 조합경비로 노인 대학생들에게 민속촌 관광을 시켜준 행위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20 판결)

4. 집회 · 모임 등 개최 제한

1 법규요약

1) 국민운동단체 등의 회의 · 모임 등 개최금지 (법 §103②)

- 금지단체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
-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
- 금지행위 : 회의 그 밖의 모임(명칭여하 불문)을 개최하는 행위

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금지 (법 §103③)

- 금지주체 : 모든 단체
-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
-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아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3) 연설회 등 개최금지 (법 §101)

- 금지주체 : 모든 단체
- 금지기간 : 선거기간중
-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 · 시국강연회 · 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의 연설회나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다만,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 · 대담 또는 대담 · 토론회를 제외함)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새마을운동협의회 이사회 회의를 선거기간 중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선거기간 중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및 「연탄(쌀)나누기」 행사나 「시·군 새마을회장 수련회」를 개최하는 행위 불가
- 선거기간 전까지 다수인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현장에서 언론을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등 소속 구성원만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한국자유총연맹이 선거기간중 그 설립목적과 관련있는 사안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하여 선거에 관한 언급 없이 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례행사인 회원단합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한국자유총연맹이 전국 자유수호 웅변대회 예선 및 본선을 선거기간 중에 개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출마하려는 선거구에 지역적인 연고가 없는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선거조직을 관리하던 자들과 공모하여 산악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산악회 명칭, 간부, 회원 모집방법 등을 의논하고 참가자 약 500여명을 모집하여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산행을 하면서 산악회 발대식을 거행한 행위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715 판결)

5. 선전물(시설물·인쇄물) 설치·배부 금지

1 법규요약

1) 시설물 설치 등 금지 (법 §90)

- 금지단체 : 모든 단체
-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표시물·상징물(이하 “시설물 등”이라 함)을 설치·게시·배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더라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는 행위
 - ➡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무방함.

2) 인쇄물 배부 등 금지 (법 §93)

- 금지단체 : 모든 단체
-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등이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무방함.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하는 현수막을 단체의 내부시설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하기로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소속 구성원에게 해당 단체의 기관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시설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됨.
-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배지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광고물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또는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행위

6. 서명·날인운동 금지 (법 §107)

1 법규요약

- 금지단체 : 모든 단체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날인받는 행위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련 없이 단체의 활동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기 위하여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위하여 거리에서 또는 호별방문 등을 통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 ※ 다만, 단체가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찬성·반대하는 서명을 받는 것은 무방
-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나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서명을 받는 행위

- 노조위원장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명부 양식을 비치하고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여 소속 직원 19명의 서명을 받은 행위 (전주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10고합68 판결)
-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인사를 모으기 위해 서명지·연판장·홍보물 등을 이용하는 행위

7. 재외선거권자 대상 선거운동 금지 (법 §218의14)

1 법규요약

- 금지단체 : 모든 단체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국내에서의 선거운동과는 달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재외선거운동에 있어서 단체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단체 구성원의 선거운동 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의 대표자 및 상근 임·직원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1.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3.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외의 단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을 말함)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SNS를 이용한 재외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됨.

No 할 수 없는 사례

- 단체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인 그 구성원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재외국민후보 추대 등의 명목으로 재외국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한인회 주최 체육대회 등에 찬조금을 제공하거나, 행사관계자가 입후보예정자에게 찬조금을 요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인 또는 재외선거인에게 교통편의 제공 또는 교통비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한인회 회원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연하장에 본인사진·가족사진·활동상황·경력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기자회견장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 재외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재외선거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부탁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한인회 대표자 등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한인회 대표자 등이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 등에게 고국방문 또는 해외여행을 제공하는 행위
- 한인학교 교사가 수업시간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종교집회를 주관·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자가 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재외국민인 소속 신도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기업체의 간부가 재외국민인 소속 직원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축전이나 축하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개최를 안내하는 초청장·안내장·팸플릿 등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전내용 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 한인회 등이 발행하는 회보·소식지에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한인회 모임에서 자신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 또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 조직의 결성 또는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선전물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재외국민에게 선전하는 행위
 - ※ ○○지역교민발전연구소 등의 개설을 알리면서 후보자의 직명 또는 성명 등을 게재한 선전물 등을 첩부·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불가함.
- 한인방송·한인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해외한인단체가 그 단체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선언을 하는 행위





제4장 단체 회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1. 인터넷 홈페이지 ·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2. 전 화
3.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
4. 선거운동용 홍보물에 지지 · 추천사 게재
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에 참여
6. 거리에서의 행진 · 인사 · 연호
7. 공개장소에서의 지지 · 호소

1. 인터넷 홈페이지 ·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법 §59 · §82의4 · §82의5)

1 법규요약

1)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등 포함] (법 §59, §82의4③)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기 간 :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 방 법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후보자 포함),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수 없음.
 - ➡ 각급선거관위(읍 · 면 · 동선거관위 제외) 또는 후보자는 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 ·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 · 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 · 정지 ·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2) 전자우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 포함] (법 §59, §82의4③, §82의5)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기 간 : 언제든지(선거일을 제외하며, 전송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방 법 :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 · 음성 · 화상 · 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 ➡ 선거운동정보 작성형태에 대하여 제한은 없으므로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 · 화상 또는 동영상 등 전자우편으로 전송가능한 모든 형태로 작성할 수 있음.

- 전송횟수 : 제한 없음.
 -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의 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전자우편에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시] 선거운동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 1541(또는 080서비스번호나 E-mail 주소)
- 선거운동정보 전송 시 유의사항 (아래 '3) 문자메시지'도 같음)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3) 문자메시지 (법 §59, §82의4③, §82의5)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기 간 : 언제든지(선거일을 제외하며, 전송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방 법 :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함.
 -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 발송시에는 '선거운동정보'와 '수신거부' 표시 의무가 없으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 [예시] 선거운동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주세요.
수신거부 1541(또는 080서비스번호나 E-mail 주소) +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전화번호

2] 주요선례

1)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포함]

Yes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자유게시판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를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위법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정당·입후보 예정자에 관한 지지·반대를 표현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
- 포털 또는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후보자의 홈페이지의 URL을 게시하는 행위
- 당원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 등에 소속 정당의 정당명·로고로 구성된 통상적인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 ▶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1회만 게시하더라도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됨.
- 누구든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에 후보자 사칭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 누구든지(법 제82조의7에 따라 후보자 및 정당이 인터넷광고를 하는 행위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료광고를 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향우회·종친회·동창회·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모임이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2) 전자우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 SNS 포함]

※ 아래 사례 이외에도 상기 제4장 1.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술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es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운동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3) 문자메시지

※ 아래 사례 이외에도 상기 제4장 1.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술한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es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
- 문자메시지의 배경 서체(font)의 크기·색깔 등을 조정하여 발송하는 행위
-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등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 이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20명씩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선거일에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자가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해당함.
 - ▶ 문자메시지 발송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동보통신 횡수에 포함됨.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나 정당 로고를 전송하는 행위

2. 전 화 (§82의4 · §109)

1 법규요약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 ➔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만 가능
-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할 수 없음.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로그송)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이용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예비후보자 제외) 선거운동기간 전에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가정집, 기타 사무실에 이미 설치된 전화 이외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하여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자원봉사자로 참여

(법 §60 · §60의3 · §62 · §63)

1 법규요약

1) 선거사무관계자

- 선임주체 :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
-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 대 상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이하 이 항목에서 '선거사무장 등'이라 함) · 대담토론자 등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선거관리위원회위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 · 리 · 반장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선거운동방법(예시)
 -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어깨띠나 뒤풀 · 표찰 · 수기 · 마스크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장애인후보자에 한함)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장애인예비후보자에 한함)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
 - ➡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관할선관위가 교부한 신분증을 반드시 패용
 - ➡ 이외에도 아래 '2)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선거운동 자원봉사자¹¹

- 자 격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별도의 선임절차 없음)
-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 선거운동방법(예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 발송, 전자우편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선거일 제외) 가능하되, 1회 20통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법 §106)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법 §82의4)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부터 지정되어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법 §79)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이 되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법 §93)
 -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1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법 §60의3)
-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법 §105)
- 정당의 사무소·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사무처리를 보조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제외)라 할지라도 선거사무소 등에서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 없는 단순 근로(운전·청소·차 대접·물품 정리 등) 가능

11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기간중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2014. 4. 대검찰청, 선거법 벌칙해설)

- 대가수수 금지 :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 표시,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지시·권유·요구·수령하거나 알선할 수 없음.
 - ➔ 다만,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은 10인이내)는 1만원 이하의 식사료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음.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중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집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화를 증설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89조 등에 위반됨.
- 선거운동자원 봉사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다만, 선거일이라도 선거운동자원봉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단순히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No 할 수 없는 사례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자원봉사자에게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자장면 등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755 판결)

4. 선거운동용 홍보물에 지지·추천사 게재 (법 §64, §65)

1 법규요약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
-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 방 법 :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 법정 선거홍보물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명의의 지지·추천사 게재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57조의3 제1항제2호에 의한 정당의 당내경선후보자 홍보물에 당해 정당의 당원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제3자(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를 제외함)가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후보자의 선거벽보·선거공보에 지지 글을 게시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대표명의로 선거벽보·선거공보에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

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에 참여 (법 §79)

1 법규요약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연설원으로 지정된 사람
-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 방 법 : 법 제79조에 의한 공개장소 연설 · 대담에 참여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의 대담을 하는 행위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연설 · 대담시 선거사무원이나 일반 선거구민이 자발적으로 로고송을 함께 부르거나 울동을 하는 행위
- 공개장소 연설 · 대담 시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이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하여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녹화기를 방영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으로부터 연설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 · 대담을 하는 행위
 - ➡ 다만,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6. 거리에서의 행진 · 인사 · 연호 (법 §105)

1 법규요약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 방 법 :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 포함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리를 지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음.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 이 경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 ➡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경우에는 인원의 제한이 없음.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포함한 3인이 1조가 되어 공연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장구와 북을 치면서 거리를 행진하거나, 기타와 휴대용 봉고를 치면서 밤에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단순히 한 바퀴 돌고 나가는 행위
- 선거운동원 6명이 한조가 되어 선거구 13개 동을 순회하면서 후보자가 연설하는 유세차 옆에서 음악에 맞춰 단체울동을 하는 행위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No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선거연설을 끝내고 청중들에게 부정선거확책주장을 하면서 자기를 따를 것을 외치자 이에 호응하여 박수를 쳐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군중들로 하여금 부화뇌동하여 가두행진을 하도록 선동을 하고 연호를 하면서 가두행진을 하는 행위 (광주고등법원 97. 2. 20. 선고 72노456 판결)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연설·대담용 차량이 아닌 트럭에 후보자의 선거운동 로고송인 '다함께 차차차', '뽀뽀뽀' 등의 개사곡이 녹음된 녹음기를 장착한 다음 확성기를 통하여 가두방송을 한 행위 (창원지방법원 1995. 12. 7. 선고 95고합370 판결)
- 자원봉사자가 후보자의 연설 중에 성명을 알 수 없는 50여명에게 “불꽃놀이 용품에 불을 붙여서 흔들어 달라”면서 불꽃놀이 용품을 나누어 주고, 이들은 불꽃놀이 용품에 불을 붙여 흔들면서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게 한 행위 (부산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10고합577 판결)

7.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법 §106)

1 법규요약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기 간 : 선거운동기간중
- 방 법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관혼상제장소,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등)에서 육성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2 주요선례

Yes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와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으로 사용하는 등 선거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확장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하는 행위
- 무등록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철역에서, 자신 소유의 1.4톤 화물차량에 확장장치를 1대 설치한 다음 “사랑은 아무나 하나”의 가사를 “기호 4번 □□□, □□□”등으로 바꾼 로고송을 방송하면서 전철역부터 구청 사거리까지 3km 가량을 운행하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4고합223 판결)







제5장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의 한계

1 법규요약

1)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제한 (「정치자금법」 §31)

-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2) 특정 행위와 관련한 기부 제한 (「정치자금법」 §32)

- 주 체 : 누구든지
- 다음의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 공직선거에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하는 일
 -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등

3) 정치자금 기부의 알선 제한 (「정치자금법」 §33)

- 주 체 : 누구든지
- 행 위 :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음.

4) 단체 회원의 정치자금 기부

- 당비 납부 (「정치자금법」 §4)
 - 주체 :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된 자
 - 내용 : 당원명부에 등재된 정당의 당원에 한하여 당비납부 가능 (개인별 당비납부 상한액은 없음)

단체의 구성원도 당원이 될 수 있음

- ▣ 단체의 구성원이라도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는 당원이 될 수 없음.

● 후원회에 후원금품 납입 (「정치자금법」 §11)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후원금품 납입 가능
 - ➡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 모든 후원회에 연간 총 2,000만원까지 후원금품 납입가능
 - ➡ 후원인(후원회 회원여부를 불문함)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가능
 - ➡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함.

-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기탁 (「정치자금법」 §22)
 - 대상 :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 내용 :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각급 선관위(읍·면·동선관위 제외)에 기탁할 수 있음.

정치자금 기부관련 단체의 지원활동 가능 범위

-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고자 하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단체의 구성원이 「정치자금법」 제16조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되어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 단체가 소속 회원들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고지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안내장 등에 모든 국회의원후원회의 계좌번호와 후원금 면세제도 등을 공지하는 행위
- 선거일전 180일 전에 소속 회원에게 단체의 활동에 협조하는 국회의원의 명단과 후원금의 기부를 단순히 안내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행위
 - ➡ 이 경우 후원금의 기부를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를 벗어나 후원금의 모금과 기부를 매개·대행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45조에 위반
- 후원인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제3자가 단순히 후원금 또는 인적사항을 후원회에 전달하는 행위

2 주요선례



판단기준

-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상 제한규정은 없음.

- ➡ 다만, 공무원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
- ➡ 교사가 공직선거후보자 후원회에 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의 정치운동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치자금법」 상 제한규정은 없음.
-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노동조합에 후원금 모금 담당자를 정하여 위임할 때 「정치자금법」 제16조에 따라 후원금 모금을 위임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개인·단체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시 단순히 저서의 출판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 될 것임.

Yes 할 수 있는 사례

- 사회단체가 공직선거의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후원금의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
- 국제행사와 직접 관련있는 단체와 정당이 공동으로 국제행사를 주관·개최하고 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당과 단체간에 상당한 정도로 분담하는 행위
- 단체(기업, 민간단체 등)가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상의 판촉·홍보용 물품을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 다만, 기부의 동기, 금액,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의 판촉·홍보물품의 제공이라 기보다는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위반

- 지지후보자에게 자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고자 하는 원거리 거주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분회장이 「정치자금법」 제16조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되어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 ▶ 이 경우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을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33조에 위반됨.
- 교사·공무원이 공직선거후보자에게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선거와 관련하여 소요 되는 경비를 유상대여 하는 행위
- 후원회지정권자의 소속 동창회 홈페이지에 단순히 당해 후원회의 예금계좌·연락처 등을 게시하는 행위
 - ▶ 이 경우 「정치자금법」 제15조에 따른 후원금 모금의 고지·광고에 이르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의 사진·학력·경력 등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게시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15조 및 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당원이 소속된 회사가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급여에서 당비를 공제하여 그 직원이 정하는 정당에 당비를 납부(그 소속 직원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당비에 대하여는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하여야 함)하는 행위
 - ▶ 다만,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을 강요하는 경우 「정당법」 제42조에 위반되며,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당비납부를 알선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33조에 위반됨.
-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을 위임받은 자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방법으로 모금한 후원금을 회계책임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법인이 국회의원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 법인과 관련된 자금을 후원회에 기부하는 행위
- 법인이나 법인과 관련된 자금을 익명으로 기부하는 행위
- 후원금 모금주체가 아닌 동창회·종교모임 등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 사회단체가 특정 후원회의 후원금품을 모금하기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권유하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후원금 모금을 대행하는 행위
- 국제행사를 정당이 주관·개최하면서 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명목상 특정 단체와 공동주관의 형식으로 개최하고 정당이 부담해야 할 경비를 단체가 부담하는 행위
- 노동조합이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공직선거 입후보시 납부하는 기탁금의 일부를 소속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위
- 교사(공·사립)가 공직선거 후보자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후원하는 행위

법제처 유권해석(2005. 11. 7.)

1. **질의** :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

2. **회답** :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임.

3. 이유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면서도 그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고,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준 등을 확립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운동을 기하기 위한 법령인 바, 공무원의 정치자금의 기부 가능 여부는 「정치자금법」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헌법」 제7조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 및 제65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에 의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장 등의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확보를 통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을 추구하고,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제공하며,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대화의 중재자 내지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임.
- 한편, 「정치자금법」 제6조에 의한 후원회는 정당,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대통령선거권선 후보자 등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정치자금법」 제2조)로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인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정치적 행위가 허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상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 할 것임.





부 록

1. 정치인 팬클럽 조직·활동 관련 사례예시
2.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참여활동 관련 판례
3. 단체활동 관련 법조문
4.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선거사무 일정표



정치인 팬클럽 조직 · 활동 관련 사례예시

1 법규요약

📦 선거운동 및 사조직 설치 등 금지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인 모임(정치인 팬클럽 포함. 이하 같음)은 그 기관 ·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법 제87조제1항).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법 제87조제2항).
 - ➔ 당초의 설립 또는 활동목적을 벗어나 선거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조직에 해당됨.
-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인 모임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음(법 제81조제1항).
-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법 제103조제3항).

📦 벌칙

-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 · 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
- 법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후보자등 초청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
- 법 제10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각종 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2] 판단기준

-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정치인팬클럽의 홈페이지에 팬클럽의 명의 또는 팬클럽대표자의 명의로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도록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87조 또는 제89조에 위반됨.
 - ▶ 다만, 팬클럽 회원(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외)들이 개인 자격(팬클럽 명의 또는 팬클럽 대표자 명의 제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 발송,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가능
- 팬클럽이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선거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의 집회는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집회에 해당하므로 법 제254조에 위반됨.
- 행사 목적에 맞는 제한된 범위안의 회원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행위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산행·체육대회, 학술·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해당 입후보예정자가 계속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법 제254조에 위반됨.
- 불우이웃돕기 등 일반선거구민에 대한 정치인팬클럽 명의의 기부행위는 해당 정치인을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팬클럽의 경비 또는 팬클럽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자금법」 제2조 또는 제31조에 위반됨.
-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의 경우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경선 입후보예정자를 지원하거나 경선운동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경선의 경우 법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 자와 방법을

정하고 있어 팬클럽 및 그 회원들이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팬클럽 내부에 경선 운동기구 설치 불가)

3 사례예시

1) 팬클럽 조직 결성·운영 등

Yes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 팬클럽이 통상의 활동·운영을 위한 내부조직을 두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한 내부활동을 위하여 연대조직을 결성하는 행위
-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를 위하여 팬클럽·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홍보·선전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

부조직을 두거나(대선거획팀, 온라인홍보팀, 정책홍보팀 등) 사무소를 설치하는 행위

- 팬클럽의 정관·규약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임을 규정하는 행위
-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가 참여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팬클럽 내부에 경선대책본부 등 경선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행위

2) 팬클럽의 ON-LINE 활동

Yes 할 수 있는 사례

- 팬클럽의 홈페이지에 해당 후보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동정 등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후보자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비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로 운영하는 행위
- 팬클럽 회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팬클럽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게재하는 행위 제외)들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 발송,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을 전송하는 행위
 - ➡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전자우편 발송 불가
- 팬클럽 회원(팬클럽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게재하는 행위 제외)이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등 포함)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

No 할 수 없는 사례

-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 팬클럽 회원이 선거일에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SNS 등 포함)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3) 팬클럽의 OFF-LINE 활동

Yes 할 수 있는 사례

- 팬클럽이 축구나 등산에 관심이 있는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 ▶ 다만, 통상적인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팬클럽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홍보하는 등 방법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법 제115조·제254조·제87조·제89조·제103조 등에 위반
-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를 위해 통상적인 등산을

하는 경우 당해 후보자를 초청하여 함께 등산을 하며 담소를 나누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참석하게 하는 것은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법 제254조 또는 제103조에 위반

●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목적에 맞게 친목도모·학술·취미활동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하는 행위

➡ 다만, 회원이 아닌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그 양태에 따라 법 제254조에 위반됨.

● 팬클럽 회원이 선거일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단순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다만, 호별방문 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특정 정당·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기타 표지물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불가함.

No 할 수 없는 사례

●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발대식 등의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지원을 위한 조직의 발대식을 개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운동을 도모하는 팬클럽 등 단체의 회원들에게 그 소속 단체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 팬클럽이 그 이름을 밝혀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기타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선전구호 등을 연호하거나 행진하는 행위
- 후보자의 성명 등이 게재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옷이나 기념품 등을 판매하거나 착용하는 행위
- 팬클럽이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법 제112조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외에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팬클럽의 임원 등이 후보자의 성명·사진(캐리커처 포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거나 달력, 티셔츠 등을 회원 등을 대상으로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 통상적인 친목도모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팬클럽 활동을 대외적으로 선전·홍보하는 등 방법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동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참여활동 관련 판례

1]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탈법행위로 보지 아니한 사례

1) 환경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련 없이 행하는 4대강사업 반대활동

1997년 창립된 이래 지속적으로 환경보호운동을 하여온 '안양군포의왕 □□□□□ □'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찬성·반대하는 내용 없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진전시, 인쇄물 배부, 서명운동, 집회개최, 집단행진 등을 한 행위 (대법원 2011도3447)

➡ '안양군포의왕□□□□□'은 지방선거 1년 전 4대강사업 초기부터 이미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6.2.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활동이 활발해지기는 하였으나, 4대강사업의 본격적인 진행에 따라 반대운동도 강화된 측면이 강해 지방선거를 겨냥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동 단체가 게시·배부한 사진·인쇄물·현수막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언급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동 단체가 4대강 사업 반대후보자들의 당선을 목표로 출범한 '2010 유권자◆◆◆◆'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위 활동은 동 단체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2)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단체의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련없는 서명운동

◎◎연대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문구 또는 발언행위 없이 종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지하였던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서명운동'을 주관한 행위 (대법원 2011도9243)

- ▶ 동 단체가 2010. 6. 2. 지방선거에 임박한 2010. 3. 16. 출범하였다 하더라도 동 단체의 대표자가 2002년경부터 무상급식실현을 위한 단체에 관여하면서 학교급식●●본부의 대표자 등으로서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해 오다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무상급식연대를 출범시켜 그 대표자로서 활동하면서 종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지하였던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한 것임.

3) 환경단체의 4대강사업 반대를 위한 시설물에 투표참여 독려문구 게재

‘수원■■■■■■’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찬성·반대하는 내용 없이 사진전, 서명운동 등을 하면서 주변에 게시한 피켓·현수막·서명용지와 시민들에게 배부한 스티커·배지 등에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내용 또는 “6·2 투표 참여하는 시민, 깨어있는 양심”,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등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게재한 행위 (대법원 2011도5344)

- ▶ 수원■■■■■■은 2002년 설립되어 선거이전부터 지속적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운동을 해왔으며 반대운동을 하면서 게시한 사진·피켓·현수막·서명용지 등에 특정 정당·후보자 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불만한 자료가 없고, 현수막·피켓·스티커·배지에 기재된 문구도 정부의 4대강사업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므로 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 위법한 사례

1)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의 문구가 게재된 피켓사용

수원■■■■■■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4대강 사업 반대운동 횡수를 늘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종전과 달리 “투표를 던져 4대강을 죽이는 악의 무리를 물리쳐라”, “4대강 삽질을 막고 생명의 강을 구할 영웅 바로 투표권을 가진 당신입니다. 6월 2일 당신의 힘을 보여주세요.”라는 선거관련 문구를 기재한 피켓·현수막 등을 게시한 행위 (대법원 2011도5344)

➡ 수원[]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활동을 전개한 '2010 유권자[]', '6·2 경기지방자치[]', '6·2 수원지방자치[]'에 직접·간접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으며, 위 문구의 내용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우호적인 정당이나 후보자에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

2) 무상급식 찬성·반대 후보란이 구분된 투표용지모형의 게시대 설치

◎◎연대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서명을 받으면서 '선거'라는 문구와 '친환경 무상급식 찬성후보'란과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후보'란으로 나뉘어진 투표용지모형의 게시대를 설치하여 스티커를 첩부하도록 하고, 2010. 6. 2.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과 광고판으로 홍보활동을 하면서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2010 유권자[] 회원들과 함께 투표참여를 독려한 행위 (대법원 2011도9243)

➡ ○○당 등은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당만 일부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표명한 상황에서 위 활동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활동에서 더 나아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3)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중 특정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홍보물 배부

◎◎연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무상급식을!! 인연콘서트'라는 제목의 콘서트를 개최하고 서명을 받으면서 말미에 "[]당의 서민급식?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서민'급식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는 '차별'급식입니다"라고 []당의 급식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한 행위 (대법원 2011도9243)

➡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는 일상적·업무적인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당의 정책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며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낙선 또는 당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4) 특정 정당과의 정책협약식에서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발언

○○연대 대표자가 야5당 대표자들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보다 책임감 있고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 ■■당에서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인데 이에 맞서기 위해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야5당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적극적으로 함께 했다. 야5당 대표들은 지방선거 정책에 관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빠른 선거연합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발언한 행위 (대법원 2011도9243)

➡ ○○당 등과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당을 언급하며 ■■당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야5당이 선거연합을 통해서 승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낙선 또는 당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5)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후보자가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

○○연대 대표자가 ◇◇노동조합이 주최한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4대강을 저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 왜 선거법위반이고, 왜 불법 집회입니까 저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행위 (대법원 2011도9243)

➡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지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3] 참고판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위 조항에 규정된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조항의 입법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도8716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 「공직선거법」 제107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무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445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의 판단 기준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체가 그 지향**

하는 목적에 따라 주최한 집회와 활동이 그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활동이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그러나 한편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그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위에서 본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선거쟁점이 된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결과적으로 그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당, 후보자,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참조).

단체활동 관련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10조(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①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4.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5. 삭제<2005.8.4>

6.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 ② 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사회단체 등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 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 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예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 후단의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2.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②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장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

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

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02.3.7,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4.1.17〉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되, 그 부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삭제〈2010.1.25〉
- 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 ⑥ 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05.8.4, 2010.1.25〉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

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2005.8.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②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2000.2.16, 2004.3.12, 2005.8.4, 2012.10.2, 2014.1.17〉

- ②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이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012.10.2〉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신설 1995.12.30〉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개정 2012.1.17〉

- ②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2.29〉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① 삭제〈2010.1.25〉

-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신설 2005.8.4〉
-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개정 2010.1.25〉
- ④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 ⑤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2010.1.25)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1.25〉

③ 삭제(2010.1.25)

정치자금법

제4조(당비) ①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 ②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하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1.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2. 제1호 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 ③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 ④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한다.
- ⑥ 후원인의 기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 다.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 라.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선거사무 일정표

시행일정		실시 사항	기준 일	관계법조
'15.10.16.부터 '16. 5. 13.까지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15.11.15.부터 '16. 2. 13.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5, 6 규§136의4, 5
12. 15.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16. 1. 14.까지	목	각급선거관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동·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까지)	법§53①②
1. 14.부터 4. 13.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3.부터 4. 13.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4.부터 3. 4.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4.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22.부터 3. 26.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4.부터 3. 25.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30.부터 4. 4.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⑥ 규§136의15
3.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4.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첨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4.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4. 3.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5.부터 4. 8.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8.부터 4. 9.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3.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단체의 선거운동 안내

발행 2016년 2월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의도선거지원단(Tel. 02-780-2684)
편집·인쇄 한국학술정보(Tel. 031-940-1083)
